



부산 문화로 通

부산문화재단 10주년 기념 열린 포럼

2019.9.25.(수)
14시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안용복방

진행 순서

14:00 - 14:05

인사말

강동수 대표이사

14:05 - 15:35

주제발표 1 (P.1 - P.23)

국가 문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전략

임학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주제발표 2 (P.24 - P.47)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부산문화재단 과제와 역할

남송우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 부경대학교 명예 교수

지정 토론 (P.48 - P.57)

좌장 :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욱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상임이사

양성수 사상구 생활문화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수현 무용가, 판댄스 씨어터 대표

김배경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

15:35 - 15:50

열린 토론

청중 참여 질의

주제발표 1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전략

임학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hsyim@catholic.ac.kr)

CONTENTS

- I. 발제의 초점
-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III.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 IV.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전략
- V. 맺으며

I 발제의 초점

1. 초점

- “문화 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담긴 국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역” 관점에서 살펴보고
-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모델과 전략을 탐색

I 발제의 초점

2. 문화정책 협치(Cultural Policy Governance)란

Governance 어원 : To Steer or Give Direction

Governance의 무정형성(amorphous) : 동태적인 협력적 상호 작용

Arts Governance (Rentschler Ruth, Arts Governance, 2015)

- 감성적 공간(emotional space)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
- 예술적 수요와 사업적 수요의 균형
- 전략적 접근 : 외부 환경과의 관계 형성, 이해관계자 참여
- 행태적 접근(human behaviour) + 제도적 접근 (system, institutions)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1.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맥 락>

- 지역 문화 분권과 자치가 문화정책 핵심 가치로 부각
- 문화정책의 재정 분권, 권한 분권 흐름
- 문화정책 사업의 지방이양 흐름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1.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이 슈>

■ 지역 간 불균형 우려(Equity)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이슈

■ 책임성 이슈 (Public Accountability)

- 지역 문화재정 확보 및 운영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 정책 전문성 확보 이슈 (Policy Capacity)

-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 역량 강화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2. 지역 주민 모두의 문화권 실현

<맥락>

- 소외계층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확대
- 문화권(cultural right),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확립.
- 문화정책의 인본주의 : "사람" "개인"에게 의미 있는 문화정책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2. 지역 주민 모두의 문화권 실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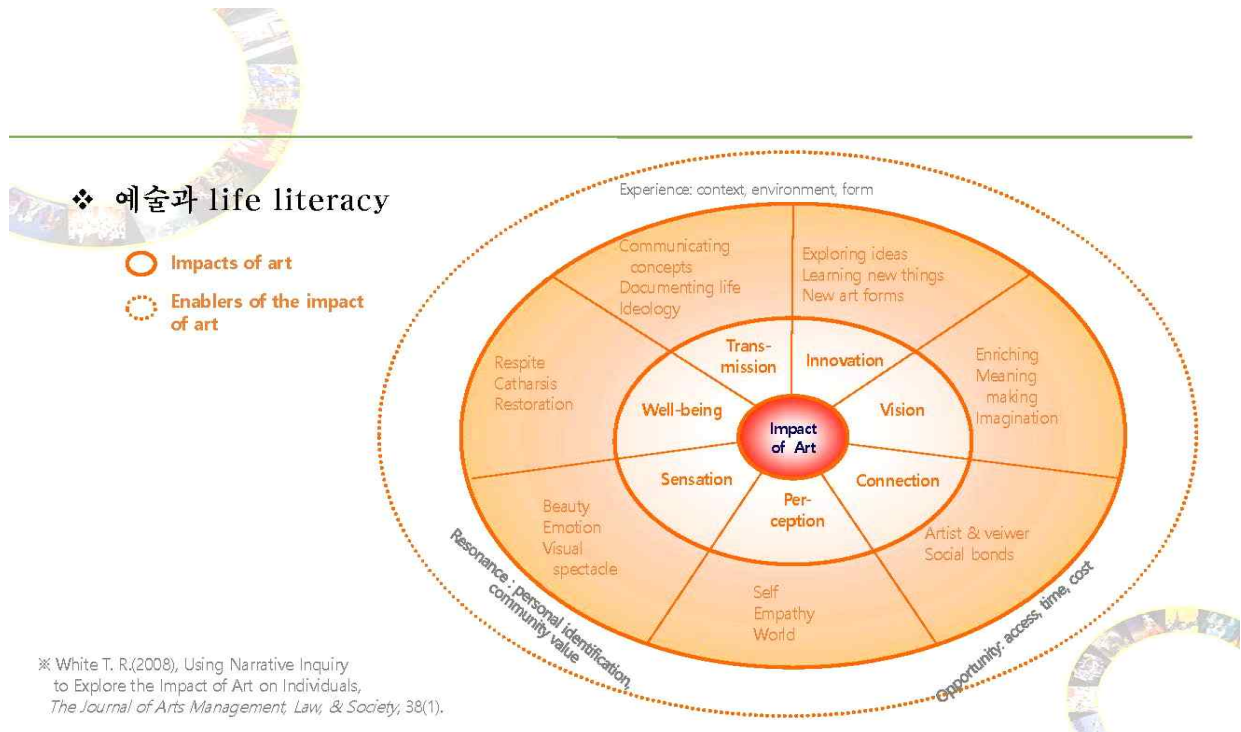
- 일상 생활의 문화 인프라 조성
- 지역형 문화통계 및 정책데이터 체계 구축
- 소통, 참여, 협력 기반의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체계 구축
- 민간부문의 문화 역량 강화 및 활용 (Public - Private Partnership)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3. 문화의 가치 창조 체계 구축 (valuation)

<맥락>

-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으로서의 문화와 예술 : 성찰과 통찰의 힘
- 문화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
- 문화를 활용한 사회적 창의성 증진,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체계 구축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관점

3. 문화의 가치 창조 체계 구축 (valuation)

<이슈>

- 문화의 가치 옹호 :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 ?
- 지역문화 생태계의 혁신, 네트워크, 공정성, 다양성 확보
- 창의적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환경 조성
- 지역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활용 체계 구축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4.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맥 락>

- 미래 문화정책 환경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확대
문화비전 2030(2018), 새예술정책(2018), 문화예술교육정책(2018),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2018)
- 기술과 문화, 기술과 인간, 기술과 사회 맥락에서 "문화"의 역할 논의
-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관을 고려한 문화정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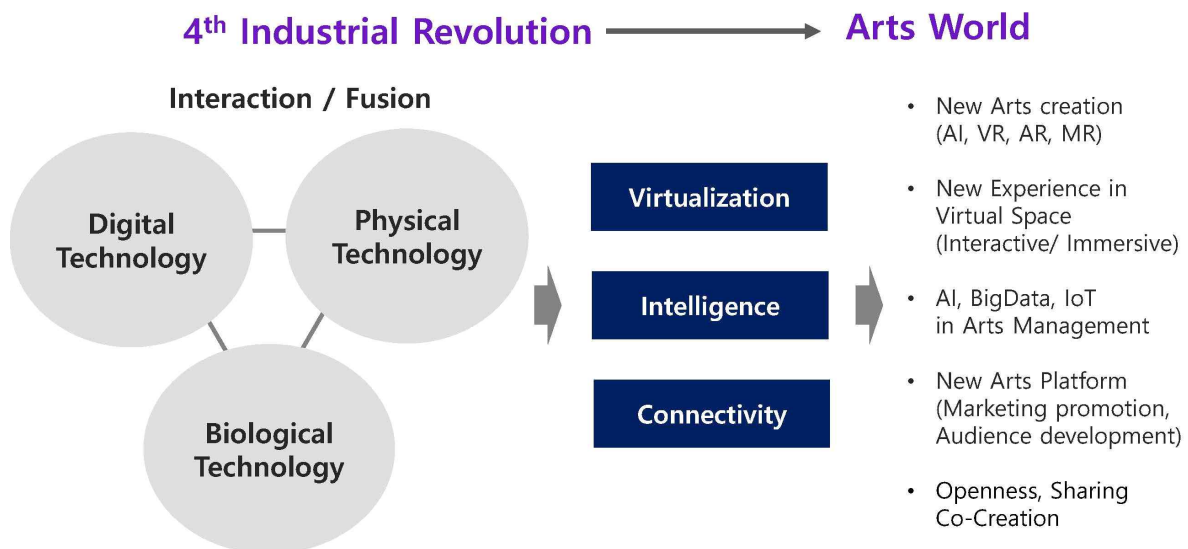
II 국가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관점

4.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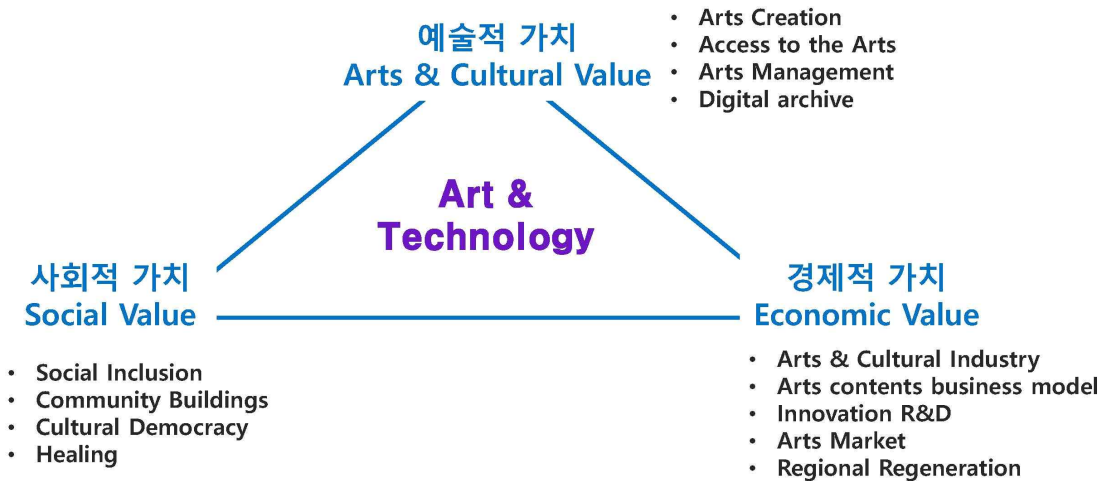
<이슈>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격차 (digital divide) 문제
- 개인화된 소비→ 사회적 관계성 약화 문제
- Algorithmic Bias → 주체적 참여문제 한계
- 뉴미디어 이용자의 소외, 우울증 문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



4차산업혁명 시대, 예술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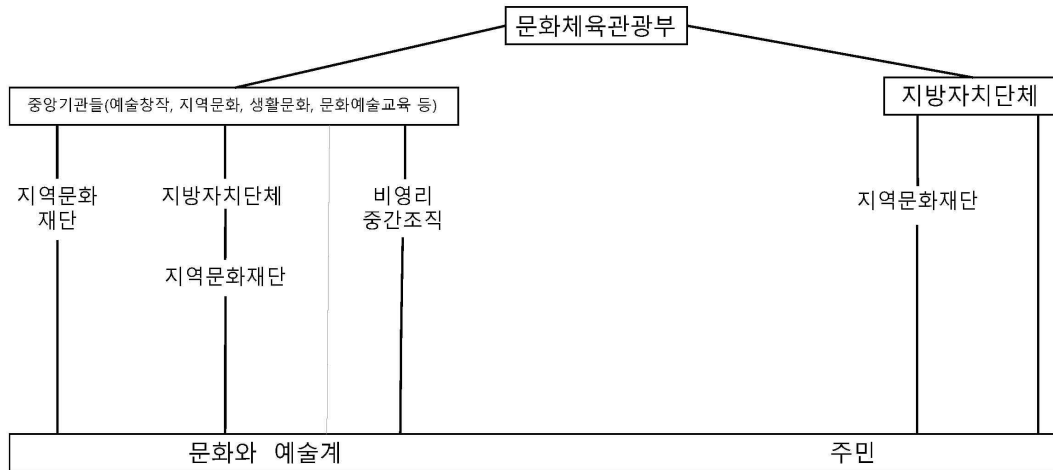
III 지역 문화재단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1. 현행 국가의 지역 문화정책 전달체계 실태

<맥락>

- 전달체계의 복잡성 (complexity)과 산만성(distraction)
- 개별 사업 중심의 전달체계와 지역 매칭
- 지역문화재단의 총체적 문화정책 체계 구축 저해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술창작 활성화 정책, 생활문화정책, 지역문화정책의 간막이 현실)
- 지역문화재단과 민간 문화예술단체와의 경쟁

현행 국가의 지역 문화 지원 전달체계 현황



III 지역 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1. 현행 국가의 지역문화정책 전달체계 실태

<이 슈>

- 개별 사업 기반의 전달체계를 통합사업 체계로 재구조화
- 지역 특성과 수요 기반의 자율형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개발

III 지역 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2. 취약한 신뢰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의지와 인식에 대한 불신
- 지역 문화정책 과정의 폐쇄성
- 지역문화재단의 관료제화에 대한 우려
- 협치 경험의 취약성 (협력 보다는 경쟁 상황)

III 지역 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3.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실태

<맥락>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 중앙- 광역문화재단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실태 (기초문화재단 참여 미흡)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업체계 취약
- 지역문화재단의 취약한 정책역량

III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3.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실태

지역문화재단 현황

- 설립 재단 수 : 광역 16개 / 기초 79개
- 예산 : 광역 2019년 4,640억원 / 기초 2018년 5,540억원 추정
- 전체예산에서 국고 비율 : 광역 39.4% / 기초 4.4%
- 종사자 : 광역 2017년 1,214명 / 기초 2018년 3,973명
- 지역문화재단에 따라 규모, 활동, 조직체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큼

III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3.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실태

<이 슈>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 확보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
- 광역-기초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초문화재단의 위상 정립

III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1. 거버넌스 이념 정립

- ✓ 자율성 (autonomy) : 문화자치를 위한 자율적 정책체계 구축
- ✓ 균형성 (equity) :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 ✓ 혁신성 (innovation)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혁신과 네트워킹
- ✓ 효과성 (effectiveness) :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 증진

III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실태와 모델

2. 거버넌스 모델 4 C

협력체계 구축 Collaborative System	-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거버넌스 -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 중간연계조직의 위상 제고 및 활동체계화	- 예술 옹호 활동 - 문화정책 공론의 장	협치문화 발전 Culture
연계 - 융합 활성화 Connection Convergence	- 문화수요자 연결 - 기초예술과 문화의 연계 - 문화와 지역사회 연계 - 문화,기술, 뉴미디어 플랫폼 연계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역량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협치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지식정보 및 통계 체계 구축	협치역량 강화 Capacity

IV 지역문화재단 거버넌스 전략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1) 예술옹호(advocate for the Arts) 활동 활성화

- ① 문화예술의 가치 (value)와 영향(impact) 연구체계 구축
- ②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영향평가, 성과 공유 제도화
- ③ 예술 옹호(arts advocacy)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표, 공유함으로써, 지역으로 하여금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성과 공유는 주로 산출(output)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영향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American for the Arts (AFTA)

: Arts & Social Impact Explorer, National Arts Index, Arts & Economic Prosperity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2) 지역 문화정책 공론의 장 활성화

- 예술계 및 시민사회 참여 기반의 Roundtable, Forum 확대
- 새로운 정책커뮤니티 참여자 발굴 및 참여자 구조의 다양성 확보
- 지역문화재단의 소셜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유튜버 양성 등 지역 문화에 대한 소셜스토리텔링 및 크라우드 소싱 활성화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2. 협치 역량 강화 (Capacity)

1)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역량 강화

① 정책개발 및 연구 담당 조직과 인력 강화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사례
- Policy Lab : 정책 공론의 장, 정책개발 및 평가, 정책데이터 생산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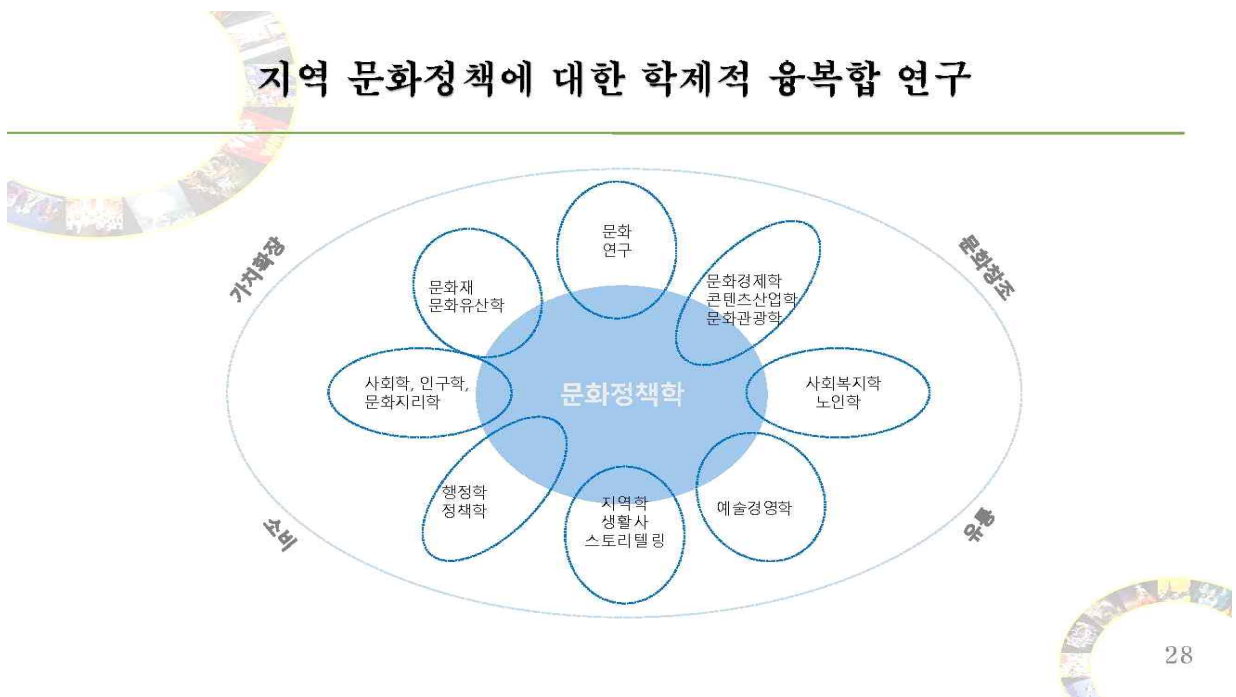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재단 사업 관련 개정 필요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정책개발, 조사연구 및 지원)

② 지역연구 네트워크 구축 : 학제적 연구 환경 조성

- 지역 연구원, 지역학, 대학 등 지역 문화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지정제도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문화정책에 대한 학제적 융복합 연구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2. 협치 역량 강화 (Capacity)

2)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협치 역량 강화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협치 역량 강화 워크숍
- 문화분야 및 비 문화분야 협업 워크숍

※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Arts Governance Program

- 예술조직의 리더들 참여
- arts governance 이해, governance skills, 거버넌스 리더십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2. 협치 역량 강화(Capacity)

3) 지역문화 지식정보 및 통계 체계 구축

- 문화자치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형 문화지표체계 개발 및 통계관리
- 지역문화 아카이빙 및 지식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현재 지역문화지표체계는 주로 시설과 인프라 중심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 지표, 활동 지표, 영향 지표는 취약한 실정.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통계 및 정책 데이터 체계도 취약.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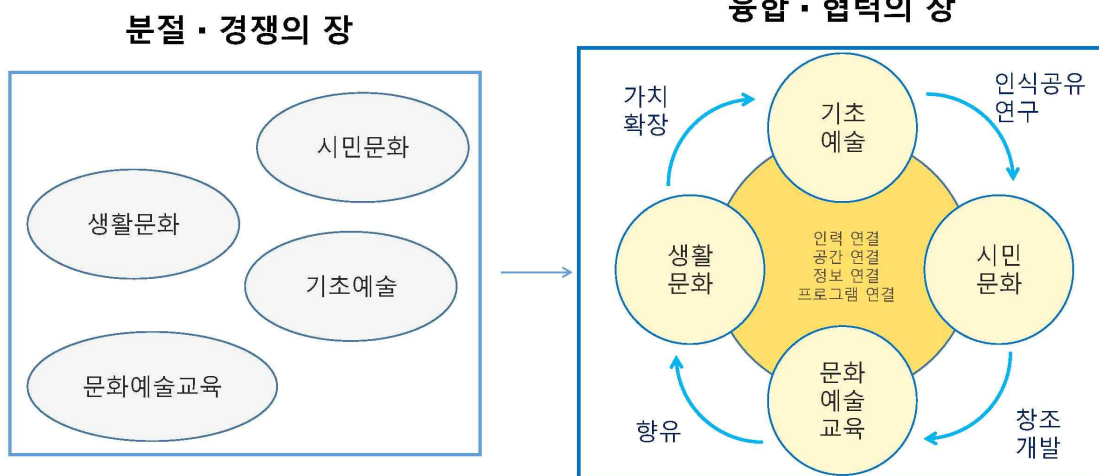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1) 문화수요자 연계

- ① 문화활동 주체로서의 지역주민 위상 : 주체성, 자발성
- ② 문화수요자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 정책사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
- ③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문화활동 특성 분석 및 정책데이터 체계 구축
(생애주기, 하위문화, 인구사회학)

● 문체부와 지역 문화정책 전달체계 조정 협의 필요

지역문화의 장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2) 기초예술과 문화의 연계

- ① 문화 영역에 대한 동기부여(motivating)와 지속발전 (sustaining) 동력으로서 기초예술 가치 인식
- ②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예술인들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
- 예술치유,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 예술협업, 생활사 기록 등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4.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 (connection)

2. 기초예술과 문화의 연계

“ 현재 광역문화재단 **예술 창작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7%이고**, 국고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 이양이 자칫 향유 중심의 문화정책**을 더 가속시키고, 예술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6개 광역문화재단별로 전체예산에서 **예술창작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에서 28.9%로 격차**가 존재함.

* 광역문화재단의 사업별 예산 비율(2018)

사업	예산 비율(%)
지역/생활/향유	33.4
공간운영/기타	29.8
예술창작	20.7
예술교육	13.2
소통과 정책	2.9

출처: 한국문화재단정책연구원(2019), 지역문화정책 현황 및 운영체계 연구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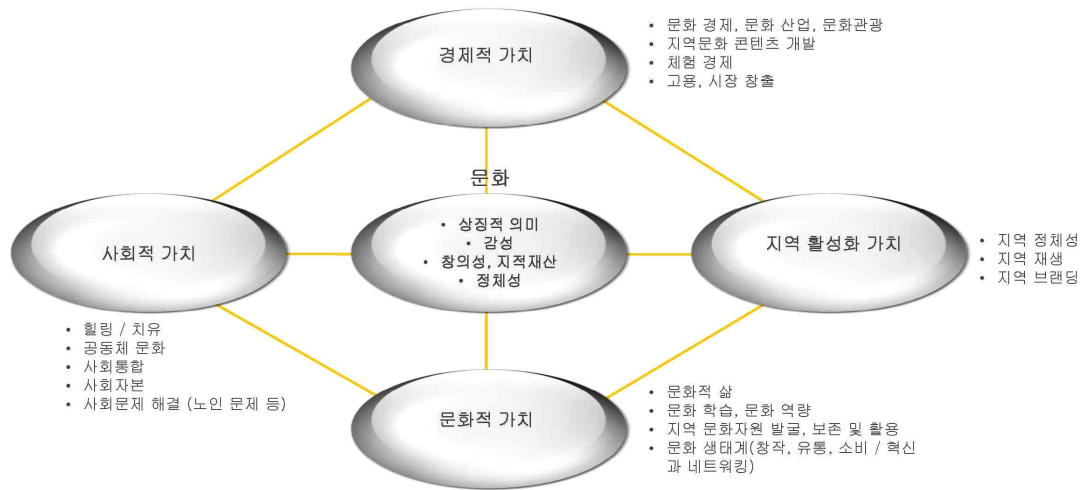
3) 문화와 지역사회 연계

- ① Community Engagement 프로젝트 개발
- ② 지역사회 문제 진단 및 문화적 해결
 - 지역사회복지, 노인문제, 지역재생, 환경문제,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활용 등
- ③ 지역정체성 프로젝트 : 기록,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문화기획, 지역브랜딩

한국고령인구 비율 2019년 14.9% → 2067년 46.5%
 기대수명 82.5세(2015-2020) (통계청, 2019)



문화의 가치와 지역사회



37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4) 문화와 기술, 뉴미디어 플랫폼 연계

- ① 4차산업혁명 리터러시 및 역량 강화
- ②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창작, 관객개발, 마케팅, 문화데이터 활용, 새로운 문화비즈니스 모델 개발
- ③ 예술, 기술, 플랫폼의 협업 환경 조성

Arts Council England : Digital Culture Report(2013-), Digital Culture Network(2019).
문화예술단체의 Digital Skills & Digital Maturity 역량 강화,
디지털전문가 컨설팅 Tech Champions 운영
Digital R & D Funds for the Arts(2013-2015)

예술가 인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지원 개선방안 연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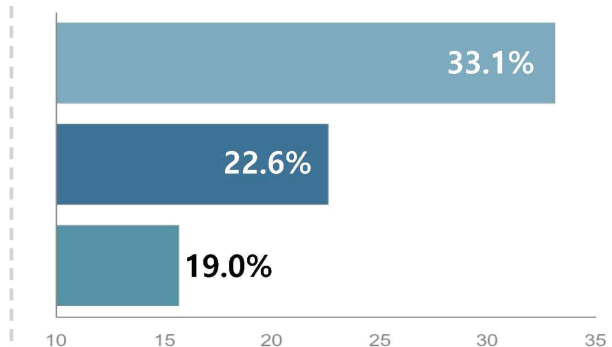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참여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조사.(2016~2017)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규 예술지원 사업 추진 영역

- 문화예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양성: **33.1%**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기반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개발: **22.6%**
- 다분야간 집단 창작 활동이 가능한 융합 Lab 및 플랫폼 운영 지원: **19.0%**



한국의 예술과 기술 연계 정책 현황



“기술”을 기술 및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예술적 접근 미흡**



예술장르 중심의 지원(디지털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전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예술생태계, 예술과 비예술 융합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다양한 기관에서 예술과 기술 연계 관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계, 소통, 성과 공유, 협업 체계 미흡**



예술가 및 예술단체 등 예술현장의 문제 해결, 예술경영 및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미흡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준거 지표 자료 미흡**

IV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전략

4. 협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Collaborative System)

1)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제도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 “협약” 기반의 지원체계 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협약)

프랑스의 계획협약제도

미국 NEA의 Partnership Agreements 지원 제도

- State Partnership Grant Program
- Regional Partnership Grant Program

영국 디지털미디어스포츠부와 ACE의 Funding Agreement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4.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Collaborative System)

2)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거버넌스

- 광역-기초 문화재단협의회 구성 운영
(경기도 문화재단협의회 운영 사례 : 경기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 참여)
-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협력형 사업 개발
(예컨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 문화정책 공유 포럼 등)

※ 향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조성되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4.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Collaborative System)

3)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 민간부문의 문화 조직을 지역문화재단 정책 파트너로 적극 활용
- 비영리 및 민간부문의 문화조직 중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 역량을 갖춘 조직을 지역사회 문화 협력 기관으로 적극 발굴, 육성
- 공공문화시설 운영, 예술마을 운영, 예술클러스터 운영,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적 지역재생센터, 장소 기반 문화사업단 등 민간부문의 참여 프로젝트 발굴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4. 협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Collaborative System)

4) 중간 연계 조직의 위상 제고 및 활동 체계화

중간 연계 조직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① 국가와 지역의 중계 및 연결점 역할 강화
- ② 지역 현장의 문화정책 이슈 발굴 및 연구 체계 구축
- ③ 지역문화재단 상호 교류와 협력, 경험과 지식 공유
- ④ 지역문화정책 인력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등) 역량 강화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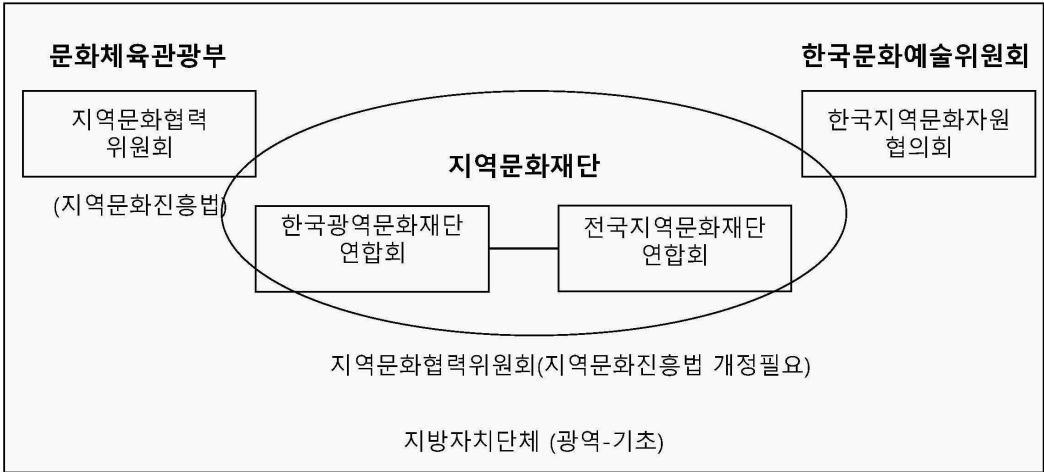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SA)
- Research, Advocate for the Arts, Connect, Event & Seminars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법적 근거 확보 방안 검토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4. 협치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Collaborative System)

* 지역문화정책 협의·조정 체계



V 맺음말

자치분권 시대, 지역 문화 생태계 행위자들의 협치 문화를 바탕으로

협치 전략, 협치 제도 및 협치 체계 지속 개발

※ 지역 문화정책협치 방법의 변화

하향적(Top Down) ➡ 상향적, 소통적(Bottom Up / Interactivity)

획일성(Uniformity) ➡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해관계자)

객체(Object), 산물(product) ➡ 주체(subject), 과정 (process)

행정 전달체계 (administrative) ➡ 혁신체계 (Innovation System)

주제발표 2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부산문화재단의 과제와 역할

-문화예술 영역에서 가장 소중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시고

남송우(부산시 정책고문/부경대 명예교수)

1. 말문을 열면서
2.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양상과 부산문화재단의 과제와 역할
 - 1) 지구촌의 문화 인식과 그 변화
 - 2) 국내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변화
 - 3) 문화 수용자와 환경의 변화
 - 4)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 다양성
3. 남는 말

1. 말문을 열면서

일반적으로 문화의 진흥이나 발전은 제도나 정책이나 예산만 주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필요 조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간이 실현해 나가는 문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신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제도나 자본에 종속되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으로 인류문화사를 펼쳐왔다. 문화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 성급한 문화산업에의 몰입, 성과주의 혹은 수월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화의 이벤트성화, 여전한 문화영역의 비자율성과 정치적 의존성 등이 한국문화 발전을 지체시킨 요인들이었다. 이제는 이런 요인들을 벗어던지고 한국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문화 주권 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세계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명명하고 있지만, 한국문화는 여전히 정치에 종속되어 있고,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문화다원주의 시대가 진행되면서, 새뮤얼 헌팅턴의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 :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이종인 옮김, 2015)가 던진 문화인식은 이후의 문화영역의 판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늘 정치, 경제의 하수인으로 치부되었던 문화가 그 가치와 태도에 있어, 정치와 경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나 나아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태도가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힘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이제는 보편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문화는 어머니이고 제도는 그 자식이라는 명제 역시 역사적, 현실적 설득력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기본법>(2016년 5월 29일 시행)을 통해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

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문화 상황은 만만치가 않다. 법적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은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문화 진흥은 새롭게 준비를 갖추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설립된 각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문화예술의 생태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역문화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양상

1) 지구촌의 문화 인식과 그 변화

유사 이래 인류가 창조한 문화¹⁾의 역사를 간명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그 중 문화예술사는 부단한 자기극복 혹은 자기갱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예

1) 문화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정의는 1871년 타일러가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 즉 문명이란, 민족연구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신앙, 예술, 도덕들, 법률, 관습, 그리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들의 복합적 총체이다”에서 시작된다. 이후 다양하게 정의된 문화의 정의를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크리버.클럭혼의 『Culture :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1952)와 볼드윈.폴크너.린즈러리의 『Redefining Culture : Perspectives Across the Disciplines』(2006)에서 시도되었다. 전자는 1871년에서 1952년 사이에 주로 영어권에서 110명의 저자가 쓴 책에서 수집한 166개의 Culture에 대한 정의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그룹 말미에서 각 그룹에 속하는 정의들에 대해 세밀하게 논평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에 대한 단 하나의 엄밀한 정의를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대신에 문화의 중심의미(central meaning)라는 정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내린 문화의 중심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화는, 명시적인 그리고 암시적인, 습득된 행동의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한, 상징에 의해서 전달되어 지는, 인간 집단들의 두드러진 업적을 구성하고 있는, 인공물에서의 구현을 포함하고 있는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통적인(즉 역사적으로 도출되고 선택된) 관념들, 그리고 특히 그들의 덧붙여진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체계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행동의 산물로, 다른 한편으로는 뒤따른 행동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로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의 명쾌한 정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그 동안의 정의들을 모두 모아서 짜깁기한 것일 뿐 정교한 정의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자는 전자의 연구가 있은 후 195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현한 문화에 대한 정의 313개를 수집하여 문화에 대하여 단 하나의 불변의 정의를 찾는 작업을 시도했다. 정의를 모색하기 위해 긴 문장으로 정의된 313개를 806개의 세부요소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를 다시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그룹은 다시 더 작은 27개의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한 그 분류들의 존재이유와 그것의 하위분류 및 그 속의 정의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화들 자체(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문화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와 문화에 대한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며 유동적이며 두서없이 산만하다 어떤 문맥이든 집어넣어서 의미가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된 정의는 없다”

그래서 이들 역시 “우리는 단 하나의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 문화는, 너무나 풍부하고도 다양한 정의들과 대단히 섬세하고 민감한 의미로 인하여 총체적 파악도 어렵고 하나의 변수로 다루기도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문화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창조적인 작업이 중심이 되는 예술영역의 문화를 바탕에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 한다.

박종한, 「문화의 정의 -하나의 통합적 정의를 찾기 위한 두 번의 거대한 도전」, 『중국어문학논집』 76, 2012, p.455, p.460, p.462, p.464 참조

술사는 끊임없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러한 사회·역사 변동과 결부된 예술양식의 변화와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변화무쌍한 모습의 한 전형을 아르놀트 하우스(Arnold Hauser·1892~1978)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갈등 구조가 없는 현실이 없듯이 문화예술사 역시 늘 갈등을 넘어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몸짓을 멈출 수는 없었다. 생성과 소멸을 통해 발전을 지향해온 문화예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온 몇 가지 지향점이 있지만,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가치지향은 문화예술 영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였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새로운 문화예술사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간의 삶과 활동의 영역이 편의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으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각각의 영역이 인류문화사에서 처음부터 분립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다. 모든 영역이 정치와 경제라는 두 영역의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남기고 있다. 종교에 의해 문화예술이 오직 하나의 색깔만을 강요당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므로 인류문화사는 어쩌면 한 영역의 힘이 모든 영역들을 종속시키던 상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해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만민의 평등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개인적 차원의 자율권과 독립성의 요구였다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요구는 다른 영역, 특히 문화예술 영역을 종속화 시켜온 정치나 경제 영역으로부터의 구속과 타율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을 향한 역사 속에서 볼 때, 처음부터 문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인권 선언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²⁾.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권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 논의는 1세대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서, 2세대의 경제, 사회적 권리, 그리고 3세대의 사회적 연대와 문화의 권리로

2)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예외적인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보편적인 권리의 제시를 통해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유엔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선언문을 준비하려고 하자 미국인류학회는 세 가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 경고에 따르면, 첫째, 개인은 그의 문화를 통해 개인성을 실현하며 따라서 개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 사이의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를 질적으로 평가할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유효하다. 셋째, 기준과 가치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 때문에 한 문화의 도덕적 코드와 신념체계로부터 인류전체에 적용할 보편적인 인권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적용 가능성 자체를 손상시킨다.

이러한 원칙의 제시는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인권의 원칙이 다른 사회에서는 거부될 수 있고 문화의 차이를 무시한 보편적인 인권의 제시가 오히려 인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서술적 상대주의 또는 초윤리적 상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해석이나 실천 차원에서 서술적 상대주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개념차원의 보편주의 확보에 주력했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추상수준의 정의를 제시할 뿐 해석과 실천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 선언의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직접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 조항은 문화적 권리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 문화적 소수나 원주민의 공동체적 권리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27조는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개인이 지배적인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언어, 인종적 소수에 속하는 개인이 지배적인 문화체계 아래서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50(1), 2010, pp.270 - 271

까지 발전해 왔다. 다원화된 오늘날은 사회적 소수가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논의는 제3세대의 문화적 권리를 포괄해야 하는 지점까지 진전해 있다³⁾. 그래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에 국민국가 내부의 지역 차원에서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관계를 논의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논제를 한꺼번에 다 논의하기에는 필자의 역량의 한계와 지면의 한계가 있기에 문화권리의 신장이란 측면에 국한해서만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이는 문화권리의 확보와 신장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결국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한 발걸음들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결과이므로 정신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계는 그 본래적 내용에 대한 중립성의 요청과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간섭을 금지해 왔다. 즉 국가는 문화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것이 대외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 한 그 활동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이나 단체의 예술적 활동을 진흥하는 보조적인 행위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사회적 영역이 국가 내에서 통합되면서 문화를 보호·육성·진흥시키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이해되었다. 특히 모든 문화의 영역이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문화의 보호와 장려 등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을 문화의 자율적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처음부터 문화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에서도 점차 문화국가 조항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유지하고 진흥하는 임무가 국가의 목표라는 문화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대하여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⁴⁾.

그래서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문화예술사를 추동해온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제정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신장 혹은 규제해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 부산지역 문화예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의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변화

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독립기념관법, 저작권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학진흥법(2016, 2, 3제정, 2016년 8.4시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 2016, 8, 4시행) 등이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률들이 넓은 의미의 문화진흥

3) 김남국, 위의 논문, p.264

4) 서순복,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18, 2007, p.69

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971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⁵⁾이다.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의 문화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1965년에 제정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했다.

1968년에는 정부산하에, 1961년에 설치한 공보부에 문화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공보부를 설치하였고, 1972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예진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1981년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 문화진흥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로 인해 1982년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 이래로 문화분야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1990년에 정부부처에 문화부가 설치되었으며, 1993년에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고, 신한국문화장달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⁶⁾.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신설된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의 흐름과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의 문화정책은 체제유지 및 통제관리 수단으로 문화가 전략해 있었으며, 검열로서의 문화정책이 존재했다⁷⁾. 그리고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5) 제정 당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지급이나 시상제도를 등을 통하여 그 진흥을 적극 추진, 권장하도록 한 것과, 둘째,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의 심의기구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셋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체로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기금을 설치·운영하게 한 것 등이다. 이 법 이전에 1952년 정치파동기인 피난지 부산에서 '문화보호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이 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로 학술원과 예술원을 위한 법이었고, 절차상 문제도 많았다.

서순복,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18, 2007, p.70

6) 문옥표,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신문화연구』, 18(2), 1995, p.133.참조

7)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되어온 주요 문화정책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에 일제로부터 광복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문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정책이나 행정은 존재하지 않고 미군정 학무국 문화과에서 예술 및 종교를 담당하였고, 지역에서는 각 시도 학무국 사회교육과 문화재보담당이 있는 정도였다. 문화 관련 법령으로는 출판등록제(1945)가 있었고, 영화의 검열(미군정청법령)이 시작되었다.

미군정 문화 정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중문화 교육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문화원이 1947년 6월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문화원은 전주, 부산, 대구, 인천, 청주, 대전, 원주, 광주 등 거점 도시에 공보원 지부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군정의 효율적 홍보와 교육을 위한 것으로, 광복 이후에 별다른 볼거리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무료 영화 관람, 전문 도서 무료 열람 등으로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미국 대중문화의 오락적 기능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준 공간이었다. 하지만 195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미국문화원은 폐쇄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와 영화 검열 및 단행본 출간을 담당하는 공보처로 분담되어 문화 정책이 수립되었고, 1955년 문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에서 선전 영화만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 당시 문화 정책은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여파로 주로 반공 의식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조선(조선미술전람회)이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50년 국립국악원 및 국립극장을 개편하였으며, 문화보호법(1952)과 저작권법(1957)을 제정하고, 정전 이후에 영화 면세 조치와 영화입장세법을 개정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부터는 다시 공보부를 발족하여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영화제작소 등 동적 예술을 담당하게 하고, 문교부는 문학, 미술, 문화재, 단행본, 박물관, 종교를 담당하는 이원화로 복귀하였다. 공보부가 지도 관리의 필요

성으로 문화예술 10개 단위 협회의 통합 체계로 1962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를 출범시켰다.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영화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음반에관한법률, 영화법(1963년 수입쿼터제와 1966년 스크린쿼터제) 등 문화 관련법이 대거 제정되었고 전통문화 전승 사업을 벌였으며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1954)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상, 지방문화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문화재 애호 운동, 독서 운동 등 각종 계몽 사업을 실시하였고,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을 유치하거나 참여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1969), 중앙국립극장(남산, 1973) 등의 문화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의 문화 정책은 공보 중심의 문화 정책으로 문화 예산에서 공보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문화예술의 규제와 통제에 치중하여 음반, 영화 등의 사전 검열이 시작되었다. 반면 입법을 통한 문화 행정으로 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법 체계를 확립한 시기였다.

유신(維新)헌법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제4공화국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를 기치로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 문화 한국의 국위 선양을 정책 목표로 수립하고 자주적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유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72년 문화예술 정책의 뼈대이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의 달(10월)이 시작되었으며, 197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문화의 날(10월 20일) 행사 시작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및 위원회 신설, 문예 활동과 문예진흥원 면세 및 기부금 조세 감면 조치, 문화 발전 종합 계획인 문예진흥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문화 통제정책 시기로 방송 금지곡과 건전가요, 영화 대본 사전 검열 및 완성 영화 사후 검열(일명 '가위질'), 정권 선전 영화 제작 영화사에 외화 수입권 배당을 유리하게 하는 등 사전심의와 검열, 그리고 선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의 철저한 국가 통제가 이루어졌다. 민족사관 정립에 문화 예산의 상당한 비중이 집중되면서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 비중이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10·26사태와 12·12군사쿠데타를 거쳐 시작된 제5공화국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문화 창조 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 문화의 국가 발전 동력화 등을 내세웠다. 문화의 법적 지위 향상과 문화적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여 헌법을 통해 문화향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 국립음악당 건립 및 5대궁 개보수 등 문화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문화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적 민주주의와 지방 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문화 소비 계층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문화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1981년 0.18%→1987년 0.3%)하였고,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재 예산보다 많아졌다. 또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수정계획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여 문화를 국가 발전 전략 차원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시작 단계에 문화 부문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규제를 완화한 공연법 개정(1982),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의 권장 사항 도입(1982), 문화 발전 장기 정책 구상 발표(1984년), 등록 제도 완화와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영화법 개정(1984), 박물관법 제정(1985), 외화수입쿼터제 폐지와 외국 영화 직배 허용(1986), 사전심의제 폐지(1986) 등이 있었다.

이전의 창작자 중심 문화 정책에서 소비자까지 확대한 문화 정책으로 문화 민주화를 내세웠으나, 실제 대중의 우민화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포츠(Sports), 영화(Screen), 섹스(Sex)라는 3S정책을 시행한 시기다. 이 정책은 지배자의 대중 조작 정책으로 일제 강점기 순치 정책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0민주항쟁과 직선제(直選制) 개헌을 통해 시작된 제6공화국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을 기치로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의 문화 복지국가 구현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고, 핵심 정책 과제로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 문화 매개 기능의 확충, 창조력의 제고, 국제 문화 교류의 증진을 내세웠으며, 문화발전10개년계획(1990~1999)을 발표(1990)하였다.

이는 문화 정책의 중심이 수요자인 국민의 문화 향수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완전 전환함을 의미하였다. 문화 정책 기능을 신설(1989)하고, 장관 서열 7위의 문화부를 신설(1990)하였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관광문화산업을 문화정책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문화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 시대가 열렸고, 본격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참여정부는 <창의한국>을 통해 문화정책의 기본정신은 ‘자율, 참여, 분권’을 기초로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원주의, 문화제도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으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로 통해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면서, 문민정부에서 눈떴던 문화산업의 육성도 강력히 추진되었다⁸⁾.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이후 약 9개월만인 2008년 9월에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발표했다. 4대 목표와 함께 제시된 추진방향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핵심 문화정책이 되었다. 주요한 추진전략은 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②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③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④ 소통과 개방의 전략, ⑤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⑥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으로 나타난다⁹⁾. 이러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5년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특별한 정책이슈를 생산하지 못한 채 부진한 반면 지방정부나 민간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화정책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결과적으로 문화향유권의 확대로 나타났다. 문화산업의 측면에서도 가장 크게 약진한 것이 한류산업¹⁰⁾이었다.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의 세계진출은 한국의 문화산업에 커다란 자극요인이 되었다¹¹⁾.

개발하였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동문화사업, 문화가족운동, 예술의 해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문화달력,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사랑방 운동 등을 개최하고, 문화향수권 신장의 대표적 사업으로 공연예술 작품 관람 시 관람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랑티켓사업(1991)을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과 공산권 국가 및 남북 문화 교류 추진,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도서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정(1991)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1994)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문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문화의 생활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문화 전략으로 ‘문화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그전의 관리, 통제, 규제 중심의 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 진흥, 조장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10. <제4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중 <제12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I): 제1공화국-제6공화국>, <제13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II): 문민정부-참여정부>,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등 참조

8) 원도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2008, pp162-163

9)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32호, p.228

10)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류는 ‘날조, 표절, 위장’ 등으로 포장된 것이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若杉大2012). 또 한국은 “일본의 문화, 기술, 역사를 왜 탐내는가? 모방된 서브컬처에 지나지 않고 모방한 로봇 애니메이션 대국”에 지나고 않는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모방·열화 복사된 한국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일본대중문화의 규제나 문화적 토양이 없는 것이 최대의 무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K-POP 프로모션V는 실제로 일본에 국한되어 J-POP 시장을 겨냥한 모방상표이며 멜로디의 일부도 모방했다고 한다. 한국은 “문화 도둑, 날조를 세계로 발신하는데 茶道(차도), 종이접기, 보자기 등은 일본문화의 한국문화로의 이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현지인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사례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현지 적응화 전략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콘텐츠 산업 자체 및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의 추론과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량기법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류산업과 쿨저팬 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명확한 결과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문화는 그 자체가 역사와 장소에 따라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비교분석모델이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및 북남미 등 각 문화권의 한류콘텐츠의 현지 적응화 모델로 발전되도록 다양하고 입체적인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박동렬, 「일본의 외래문화 유입요인으로 분석한 한류산업의 형성과 발전 연구」, 『문화산업연구』 13(2), 2013, pp.7-9 참조

이러한 변화는 이후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강화되었다. 2013년 10월 발표된 문화융성위원회의 보고에서, 문화가 있는 삶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그 내용은 인문가치의 정립,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 문화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예술계 자율적 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융합모델 발굴,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제안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정한 문화정책의 비전은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이다. 여기에는 문화, 행복, 경제, 통합, 국격의 5가지 키워드가 있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가 문화정책의 기조로 제시되었다¹¹⁾.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고, 문화관련 법안들을 다수 제정하면서, 문화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문화기본법,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문화융성 4대 법안이 시행되고,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10년 이상 끌어오던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국내적으로는 각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점은, 법 자체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 많지만, 선언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취지를 구체화 할 여건과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법률의 제정과 선언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법적 제도적 장치는 선진화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 문화예술의 현장은 이를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문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제시되었던 문화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로 이어지면서 제대로 심화·확대되지 못한 결과이다. 문화는 그 어떤 정책보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 시행 중인 문화관련 법안들의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신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나타나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의 문제

정부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법으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든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 법을 근거로 문예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기관들이 생겨났고, 이 법에 준거해서 정부의 문화정책의 상당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은 1971년 제정 이후 1995년 전면개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십여 차례 개정을 해왔다. 이런 연유로 ‘누더기법’이란 오명까지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이 법 속에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제3조(시책과 권장)①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③항에서 “제①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11) 원도연, 위의 논문, p.239.

12) 원도연, 위의 논문, 같은 면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고,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주도적 제안자가 되어야 함을 어느 정도 인정한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41조로 구성된 문화예술 진흥법 내에서, 이 이상의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논하고 있는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의 진흥은 오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만 하면 가능하다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보이는 장면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예술의 창조성의 바탕인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만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진흥법의 정신은 지역문화예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서울에 모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관을 배치시킴으로써, 중앙집권화된 서울문화예술 공화국을 만들고 말았다. 형식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던 1995년까지 지역은 정치적 지체체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시작했다¹³⁾. 그러나 정부의

13)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은 1990년대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초부터 각 지역에서 문화운동 차원에서 논의와 함께 실천이 있었다. 1980년대 문화운동의 진면목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두 편의 글이 1980년대 말에 나온 김태현의 「지역문화론」(비평문학2집, 1988)과 이운택의 「지역문화 - 80년대 지역문화운동의 전진방향과 그 실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1989)이다. 1980년대 지역문화론을 정리하는 시각이나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핵심은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이 일차적으로 동인지나 문학무크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문화가 풍성하게 자생하여 민족문화로 통합되어가야 한다는 민족문화 논리를 앞세우며, 지역문화론을 펼쳤다. 이런 지역문화론 주창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지역모순을 해결하는 물적 기반으로서의 전단계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이며, 민주화의 정착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기 이전에 지역문화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론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역문화가 제대로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문화분권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지역에 따라 보편적인 문화의 공유도 이루어지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밖에 없는 문화의 다양성이 문화의 본질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지방자치제를 통한 문화분권은 동일 선상에 놓이는 하나의 가치지향인 것이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 1980년대의 지역문화 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동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나타난다. 그 연구가 양보경의 「지역문화 활동사례 연구」(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문화정책 논총2)이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문화부의 독립과 지방자치제 실시 전망에 따라 지방연구 정책, 지방문화 행정 및 지방문화재원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관주도의 정책적 연구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지역문화권역을 나누고, 전라권의 4개 지역 6개 단체 문화활동과 강원권의 4개 지역 4개 단체 문화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8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1990년대의 지역문화에 내재해 있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는 현대에도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환경적 특색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발전이나 지원, 육성을 위한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각 지역별 특성을 이해한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과 아울러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수행되는 지역문화활동의 기능이나 종류가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같은 도시 지역도 대, 중, 소도시 등 도시규모와 계층에 따라 지역문화의 활동

과 영향력은 다양하다. 또 농촌지역에서도 비교적 도시적 특성을 지닌 군청소재지와 순수한 생산공간인 농촌에서의 문화활동 내용은 차이가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배경에 의해 문화공간이나 시설의 배치도 지역에 적합한 종류, 규모,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개방적인 문화마당, 종합문화공간, 마을 회관, 대규모 문화공간, 소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생적인 지역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의해 지역문화활동이 정착하고 있었다.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축매자를 위한 지원, 문화축매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문화발전의 문제점은 지역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중소도시지역에서는 기업의 문화투자 외면, 시설과 재정의 부재, 원형보존이 안 된 상태로의 전통문화, 생활문화의 급속한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은 문화예술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다. 지역별로 문화예술 정보자료 센터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앙과 지방간의 자료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의 정보자료 교환, 나아가 문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축매인의 교환과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일곱째, 지역문화와 학교 교육과의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문화의 뿌리가 되는 전통문화 내용이 학교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과 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이해, 해결하는 과정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항은 첫째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문화의 진흥은 각 지역이 지닌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인력의 양성과 문화공간과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의 욕구에 기초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1991년도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월간 《문화예술》지에 실렸다.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김문환의 「지역문화 운영프로그램 개발방안」, 박종국의 「지역문화예산 확보방안」, 강병주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월간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행, 1991년 5월호) 등이 있는데, 강병주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역문화가 지방자치 시대에 왜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첫째는 지방문화가 지방자치의 기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는 지방문화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다원화 분권화에 기여하며, 셋째는 지방문화만이 지방자치 시대에 요청되는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와 맞물려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가 동일선상에서 담론을 형성할 수밖에 없음을 내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1992년도에서 1994년도까지는 지역문화 시설과 공간(정지영, 박영기의 「지역문화 시설의 면적 배분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다목적예술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개념 및 공간 디자인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 14집)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 특기할만하며, 그 외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발간되는 《문화예술》지에 전국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문화 담론을 생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으로 넘어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현과 함께 지방자체와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문옥표는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정신문화연구18)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의 중심화’ 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하여 지역문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재해석, 재정의의 시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내린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은 첫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다 큰 지역공동체의 모든 주민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상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는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에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자율권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문화는 서울문화의 판박이를 벗어나지 못한 문화의 지역적 종속화가 번성하던 시절이었다. 문화예술 진흥법이 결국 서울지역 문화예술만을 비대화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서울과 지역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고, 그 격차의 심화는 결국 지역문화의 종속성에 대한 자각이 현실성을 지니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안이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역간의 너무나 심각해진 문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11월에 한시적 기구로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 시작한 활동은 10년을 훨씬 넘긴 2014년이 되어서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지닌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목적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¹⁴⁾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는 전통문화의 재해석 및 재창조를 통한 것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지역행사나 축제 등이 고안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지역연대 형성에 필요한 공공적 시민의식은 교육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확보와 교육의 지방화가 요청된다는 점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역만들기 운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있어 주민의 주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옥표의 제안에서 의미있는 사안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원적인 자원으로 지역전통문화를 들고 있다는 점과 지역 주민이 지역문화 활성화의 주체이며 중심이란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점이다.

이원태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문화정책 논총』 7)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문화의 세계화'이다. 이런 명제를 제시한 이유는 오늘날 지역문화 환경은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지역문화의 육성이라는 하나의 축과 대외적으로 문화가 인류사회를 선도하는 후기산업사회적 특성인 정보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세계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인류보편문화의 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두 축을 따로 떼어놓고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하는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지역문화의 자치화, 둘째, 지역문화의 개성화, 셋째, 지역문화의 다양화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규제에서 자율로, 둘째, 모방에서 창조로, 셋째, 획일에서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정책의 중점방침으로는 첫째, 법제도와 기구조직의 정비, 둘째, 문화행정의 인적 수단 확보, 셋째, 재정능력의 확충, 넷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안들은 상당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점에서 검토해보더라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정책과 그 정책의 실천 사이의 거리를 새삼 느끼게 한다.

14) 한국문화의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고착된 중앙집권적 형태의 관행이 빚은 결과이다. 일차적으로 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현저하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를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문화격차란 인프라 구축이란 외형적인요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생산과 소비라는 문화활동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문화인프라의 구축과 문화활동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문화활동 역시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표로 삼아 진행된 경우들이 있다. 이들 연구 중 이재희 교수의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은 1994년에서 2008년까지의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볼만 하다. 이 연구는 예술소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예술에 국한해서 문화인프라와 문화활동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격차를 분석하고

있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지역문화 격차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문화인프라 격차는 문화시설과 문화인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문화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문화시설의 불평등도는 공연, 미술전시, 영화 각 분야에서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술전시장은 미술관수나 미술관 소장작품수에서 불평등도는 감소했는데, 다만 화랑수에서 불평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관은 지방정부가 그 동안 일정하게 개입한 문화시설인 반면 화랑은 전적으로 시장기구에 맡겨진 문화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 문화인력의 측면에서 1994년과 2009년 사이에 예술가수의 변동은 인구 10만명당 1994년 수도권 41% 수준에서 2009년에는 29% 수준으로 줄어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지로서의 지위를 잃고 수동적인 문화 소비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획일적인 문화행사가 반복해서 개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문화인력을 지역이 키우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된다.

문화활동의 격차에서는 문화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논의한 결과는, 지방자치 이후 문화생산의 불평등과 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술전시와 무용 등 대중성이 낮은 일부 순수예술 장르에서는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만일 문화생산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지역 문화정책의 과제가 된다면, 그것은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소비의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고, 문화시설은 과잉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즉 비수도권의 문화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정책의 초점이 문화생산에서 문화소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문화소비의 기반 확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몇몇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적 취향이 형성되어 있어야 문화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예술교육과 관람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선호와 취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취향과 선호의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볼 내용이 지역별 문화예술의 관람과 관람의향의 격차이다. 강수택/박재홍의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추이와 문화취향」에서는 이점이 흥미롭게 분석되고 있는데, 우선 관람률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관람률 격차는 그동안 좁혀지다가 2012년에는 오히려 중소도시가 대도시를 추월까지 한 반면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격차에는 별 다른 일관된 변화를 찾기 어려우며 200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의 예술행사 관람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대도시와 농촌지역 사이의 격차가 비교적 뚜렷해진 후 그 격차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중소도시의 경우는 2012년 조사를 제외하고 언제나 대도시와 농촌지역 중간에 그러나 대도시에 훨씬 가까운 관람의향을 보여왔다고 본다.

문제는 관람의향이 실제관람률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관람의향이 실제관람으로 이어지는데 작용하는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행사 관람의 장애요인을 지역별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장애요인은 매우 비슷하고 이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는 일부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나 제일 큰 장애요소는 시간부족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비용부담이 두 번째 요인이며, 세 번째 요인은 정보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시간부족이 도시지역보다 더 큰 비중으로 첫째 요인이며, 두 번째는 교통불편, 세번째로는 비용부담, 그 뒤로 정보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소비의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각기 달리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간의 문화격차는 문화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3년 문화지표 조사 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2012년에 실시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선정, 전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등 주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항목들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긴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6조 ②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문화진흥을 각 지역 자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진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은 여전히 지역문화진흥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무엇인가 통제하지 않으면 지역문화도 제대로 진흥될 수 없다는 발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온전한 지역문화진흥이 되려면 지역분권 개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란 정체성 자체가 지역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에 지역분권과 문화분권 개념이 분명히 함께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니, 여기서 문화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을 제대로 논하기에는 힘들다.

국 229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세종시(연기군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부가 발표한 시·군별 문화지표 조사결과는 수도권의 지역문화지수 평균(0.140)이 비수도권(-0.057)보다 높아 지역간 편차를 보였다. 특히 상위 50개 중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가 23개를 차지했다. 지역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격차들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 방향성의 모색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 다양성이다. 문화 자체가 다양성을 본질로 삼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문화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생활문화의 터전을 지니고 있기에 문화의 기반 자체가 근원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마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문화의 다양성이다. 지역의 문화 다양성의 성격에 따라 문화격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격차 해소에만 급급해서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획일적인 문화격차 방안 마련으로 인해 각 지역문화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진흥방안이 마련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각 지역이 전통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성숙시키고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지역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문화의 다양성을 꽃피우는 길이란 말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문화를 평준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향성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은 지역의 문화 현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이재희의「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지역사회연구』 제18권 제4호, 2010, p.61. 강수택/박재흥의「한국사회 문화격차의 추이와 문화취향」,『현상과 인식』, 2013년 가을호, p.102. 각각 참조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주요한 법적 조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는 선에 두고 있다. 사실 전문성을 지닌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심의·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문화재단들의 기능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들을 수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단을 처음 설립하게 된 이유를 돌아본다면¹⁵⁾,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들의 모습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분명하게 정립시켜주는 사항은 크게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이

15) 부산문화재단이 출범을 준비하면서, 부산발전 연구원 오재환 박사는 「부산문화재단 설립, 그 쟁점들」에서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원의 전문성은 기존 행정의 문화예술지원체계를 현실성과 전문성을 가진 종합적인 지원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팔길이원칙’에 따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술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예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술지원기구가 되어야 하고, 지원예산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집행에 있어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두어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그간 시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웠던 지원사업의 폭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지원의 원칙인 ‘팔길이 원칙’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과 부산시와의 업무분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부산시는 하드웨어인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 총괄적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법 제도개선, 중앙정부와의 연계사업 등을 담당한다. 문화재단은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사 위탁사업,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문화시설 위탁운영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면 민관의 협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부산시의 문화재단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 취하는 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재원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부산시의 관리 감독권 안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재단의 인사와 예산, 사업의 자율성에 개입하려 한다면 문화재단은 제 2의 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문화재단도 공공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여 보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설립, 그 쟁점들」, 부산발전포럼 2008(112), 부산발전연구원, PP.32-38 참조

인천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했던 이현석 역시 같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문화재단이 성립되기 전에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부분 자치단체의 해당 부서(문화예술관광체육국) 공무원들이 담당했는데, 일을 익힐 정도가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결국 행정 관행만이 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원칙 비슷하게 통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 관행이란 것이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매년 이루어지는 문화사업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적절한 사업 수행자나 기획사를 찾아 문화행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관례였다. 이런 관례 또한 문화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문화재단이 지원사업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의 독립성을 통한 진흥을 목적으로 했다.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현석,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황해문화』2005, 12. PP.280-281참조

법들은 문화진흥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 것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가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문제시 하지 못한 행정적 진흥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에 바탕한 지역문화분권 개념이 이 법의 바탕에 전제되지 못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의 역할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2016. 5. 29시행)에 와서야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 등을 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을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정신에 의하면 문화의 위상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이념이다. 기본이념은 목적보다도 더 강하고 확실한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의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치원에서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이상의 <문화기본법> 중요 몇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기본법>에 와서야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율성과 표현활동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7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몇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요한 첫째가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둘째, 국민과 국가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셋째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등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창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재정을 투자한다고 해도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의 진흥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의 자율성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각 문화재단들이 법적인 위상은 지니게 되었지만, 이로써 지역 문화재단의 자율성이 모두 확보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재단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은 각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지역문화 정책기획 기능을 분명하게 문화재단들이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재단은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위탁 사업소의 신세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힘들다. 정책 기획력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많은 위탁 사업들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들에게 이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늘어나는 위탁사업을 주체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유지하고 있는 지역문화정책 결정권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산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해서 문화재단과 공동 협의체를 통하여 부산지역문화진흥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과 시행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명실상부한 부산문화재단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재단이 법적인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간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한민국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에 없이 문화재단들도 일반 출자출연 기관과 똑 같은 규정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수익기관이 아닌 다른 출자출연 기관과는 변별성을 가진 지역문화진흥이란 본래적 정체성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에는 힘든 불필요한 규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간섭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재원의 확보와 재단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구현하지 못하면 온전한 자율성의 확보는 지난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의 2019년도 총사업비를 분석해보면, 출연금 9.4%, 부산시비 88.5%, 국비+구비 0.4%, 자체 재원 1.7%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출연금은 대부분 재단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각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위해 출연된 예산도 있다. 그런데 지역 지자체 위탁사업비와 국비는 말 그대로 사업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위탁성 사업비이다. 이 위탁성 사업은 각 재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의 동일성격의 사업이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실현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사업은 지역협력형 혹은 지역 기획사업으로서 지역특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전체 사업의 틀은 중앙정부나 지역지자체가 정하는 입장이어서 재단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평균적으로 60% 이상이 위탁성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현재 각 문화재단의 모습은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문화정책의 대행기관임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에는 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 문화재단들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해서 집행하는 재정구조가 60%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각 재단 공통의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전환이 힘들겠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지역문화 진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국가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조건 각 재단에 위탁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문화 특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근본적인 고민없이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지역문화의 진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괄적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 각 재단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 사업예산을 마련하는 안¹⁶⁾이 제기되기도 했다. 각 지역마다의 지역정체성에 바탕한 지역문화에 대한 특성화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순으로 지역문화재단들의 재정운용 방향이 조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역마다 지역문화 진흥을 담보할 사업들을 기획하지만, 이를

16) 조정윤,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 현황과 문제점>, 2014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2014, p.45.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가문화재원의 확충,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기업 후원금 확보 등의 일반화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재정 확보방안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안이 재단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국가경제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러한 공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 그렇다고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재원 확보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 결국 재단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재단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후원의 주체가 되도록 토대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기부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을 재단의 후원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역에서 이를 실현시켜나가는 것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주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문화재단들은 전문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지원 사업에만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왔다. 그러므로 일반 주민들은 문화재단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문화의 진흥은 전문예술인들의 문화생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생산된 결과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지역문화의 진흥이 실현된다. 문화 소비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원제도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문화재단의 미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기금 확보는 부산시의 제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재원을 모으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문화재단이 시행하려다가 포기한 부산문화재단 민간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 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산지역에는 문화예술 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설립된 예술 단체들이 오래 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소위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부산 13개 구에 설립된 문화원이다. 이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단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단체들의 자율성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의 자율성의 가늠자가 된다. 현대에 있어, 모든 단체의 자율성은 재정적 독립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거개의 단체들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련부서와 씨름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예산 문제로 문화예술의 정체성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주고받는 관계로 전락해서 문화예술의 정체성마저, 문화예술의 가장 고귀한 영혼마저 팔아넘기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는 자본과 권력이다. 예술의 생성과 소비를 위해서 자본은 필요하다. 그러나 오직 자본만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담보해 주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또한 정치권력에 기대어 뭔가를 해보려는 의식 자체도 문화에

술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이다. 금력과 권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허물고 있는 가장 유혹적인 요소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력에 휩쓸려 다니는 예술 단체가 있어 왔기에 우리의 문화예술계는 제대로 된 자율성을 지금까지 확보해오지 못한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술가의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의 과거사의 흐름이 아직도 여전하다면,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는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권력과 금력을 두고서 문화예술가는 부단히 싸워나가는 자기성찰 없이는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제안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는 하루 아침에, 그리고 단 순간에 확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문화예술 영역만 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 영역의 자율성은 다른 영역의 자율성 확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한국현대문화사를 뒤돌아보아도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는 그렇게 쉽게 진전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진흥을 위한 법들을 제정했지만, 그것이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예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실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자유에 근거한 문화예술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의 핵심인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산지역문화예술의 자율성의 토대를 만들어 가려면 우선 쉽게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첫째는 문화예술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에 예속되어 휘둘리거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문화예술은 자율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형식적인 틀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의 첫째가 현재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부산국제연극제, 부산 국제 무용제, 부산 비엔나레 등 모든 문화예술 관련 수장을 스스로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문화예술의 수장을 문화예술가들에게 넘겨 스스로 문화예술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시장을 조직 위원장으로 앞세워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려고만 했던 구태의연한 문화예술가들의 금력에 기댄 훼손된 문화예술 정신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확보는 힘들다. 정치권력에 기대는 타율적 타성을 빨리 씻어내어야 한다. 어느 진영이든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문화예술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는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금력에 대해서도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가들의 자기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대에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는 근본적으로 힘들 것이다. 문제는 자본의 부정이 아니라,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문화예술인의 장인 정신을 새롭게 키워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 권력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과정일 수 있다. 어쩌면 생존의 문제와도 직면해야 할 현실이 오늘의 문화예술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현실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학진흥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부산지역성에 정합된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아직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 법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문화예술의 자율성 확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법들의 대한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에 문화예술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문화 수용자와 환경의 변화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의 변화

문화 현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축은 생성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수용자의 측면이다.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도 인간이지만, 그 생산된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생성된 문화가 그 시대에 향유되지 못하면 그 문화는 생명력을 지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문화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향유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에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의 창조 이상으로 문화의 향유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수요자들의 문화향유권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수요자에 대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수요자들의 문화향유가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선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소비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프로슈머(prosumer)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수용과 향유의 변화는 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예술가나 전문가 중심의 생산자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수용자 측에도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프로슈머의 존재는 생성된 문화를 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에 대한 지원책의 강구는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프로슈머가 전문생산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아직 고려되어야 지점이 많다. 생산하는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질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화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슈머의 창출은 현실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부산문화재단은 이 지점을 잘 고려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일상 생활문화의 활성화 요청에 따른 과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이다.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향유하는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활성화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생활문화가 풍요롭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은 생활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도 정리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주입시키는 방식으로는 생활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활문화가 무엇이며, 왜 삶에서 생활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삶에서 문화예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문화예술의 향유는 문화예술이 지닌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말

이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지닌 본질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가치에 눈뜨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향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의 위치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며, 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각 문화예술 장르별로 세분화되어야 할 부문도 있지만, 문화예술이 지닌 총체적인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령별, 지역별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령별로 유,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삶의 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령층에 따른 문화적 욕구와 문화예술의 특성을 잘 융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 체계화 작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스템과 사회교육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이란 두 방향을 잘 결합시켜나가는 하는 힘든 작업이다. 아직까지 이 두 모델을 융합시켜 제대로 현실화한 프로그램이 없기에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문화예술교육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세대별의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지역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생활문화란 그 향유주체가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마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특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우선 구단위로 생각해 보면, 동래구, 남구, 해운대, 동구, 서구, 사하구, 북구 등이 똑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동래구는 부산의 전통문화의 뿌리를 지닌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동구는 부산의 원도심이란 원형적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교육을, 해운대는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이 특화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바탕 위에 그 지역마다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만 준비되면 지역의 생활문화가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는 역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인재가 필요하고, 교육환경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 참여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체계화 하여 더 나은 활동 방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와 융합적 인문학의 필요

무엇보다 문화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재촉하는 요소는 우리의 삶의 환경의 급속한 변화이다. 그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필연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생태계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생태계의 변화는 문화생태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 혹은 이를 초극할 수 있는 문화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과 휴머니티' 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8년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특별강연에 초청된 임마 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문학은 진정한 과학적 탐구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필수요소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식하는,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철저한 분석은 훌륭한 과학을 탄생시키지만, 상상력이야말로 이 분석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때로 생경하지만 다양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디지털 인문학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하여 역사학, 사회학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저 컴퓨터에 탑재할 콘텐츠로서의 기술논의가 더 부각되어 인간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아닌 기술에 인문학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제고해 보아야 한다.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으나, 지적인 도전이나 윤리적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로 호기심과 욕구만 충족하도록 설계된 가상세계 속의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그에 수반되는 대화의 단절은 심각하다.

구글을 비롯한 다수의 회사들이 무인 자율자동차를 개발하고 아마존은 무인 비행체(drone)를 사용한 택배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을 연결시켜 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계학습, 딥러닝 등. 개개인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불가능한 최첨단 기술들의 조합으로 인류는 이미 기계에게 지능을 심어주고 있다. 이해 불가능한 기술은 마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마법 같은 기술로 기계에 생각과 인지 능력이 주어진다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더불어 같이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학습 환경에 놓일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등장하는 사회적 로봇의 사용 확대는 인간과 로봇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면,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의한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기계적 편견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령과 의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등 AI의 안전성, 윤리의 문제도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는 확실히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기술은 증가하고 있다. 기술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지 못한다. 날로 높아지는 기술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기술변화로 인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윤리적 행동의 기본원칙(도덕철학)과 존재의 본성(형이상학), 지식과 이해의 본질(인식론)에 대한 신중한 고찰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란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자연현상이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과학이 아니라 도덕철학의 한 분야이다.’ 라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기술로 인한 인간사회의 급속한 전환으로 야기될 불안정과 혼란에 대비하여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

실존의 내용을 선택할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획과 실천을 행해야 한다. 연대를 향한 자의식의 확대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문화를 바꾸는 실천의 발자국들을 시간 속에 찍어가야 한다. 이 발자국은 자신을 인간으로 지킬 수 있는 자의식과 연대의식을 계발하기 위해 이젠 “찾

아가는 인문학”으로 그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인간을 지키기는 연대’와 ‘인간증발에 대한 저항’을 일터에서 비인간화에 지쳐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호흡에 연대해야 한다. 동시에 이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을 법제화시키는 정치권력을 인간지키기 정치권력으로 바꾸거나 인간증발을 막는 법과 정책을 제언하거나 청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 간 소위 ‘A.I 시대 인간지키기 연대’와 같은 큰 조직의 힘이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현대과학은 애매하며 이해를 하고 직관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과 역사 등 인문학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제는 과학의 인문학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과학-자연과학의 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인문학의 사명 중 하나는 과학, 종교, 신학, 철학 등을 융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세계를 더 넓은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융합은 각 영역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4) 지역문화 분권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기초 문화재단 설립

현재 지역분권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문화의 온전한 실현이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분권이란 정치, 경제 나아가 문화분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지역문화분권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과정에 이제 막 들어섰다는 의미이기에 앞으로 그 구체적인 실현과정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를 새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주체가 각 지역이 아니고 여전히 중앙정부가 된다면, 지역문화진흥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지역문화분권은 요원한 과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역이란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역은 우선 그 단위가 대륙, 대규모지역, 소규모지역 등 다양한 규모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가단위나 문화단위 혹은 생태적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 이 분류도 소단위로 그 갈래가 다시 세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은 크게 나눌 수도 있고, 작게 나눌 수도 있어 지역은 그 범위와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지역문화 진흥이란 관점에서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상정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권은 문화의 원천인 언어와 생활권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가 일일생활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권, 문화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지를 정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살이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쉽게는 행정구역상의 지역갈래에서부터 그 안에서 세분화될 수 있는 작은 마을 개념의 특정 지역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도 각 지역마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지역연구소를 통해 지역학 연구를¹⁸⁾ 지속해왔다. 이러한 흐름의 원천은 1995년 지자체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지자체가

17)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권, 2004, P.162

18) 하병주,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지역연구로 할 것이냐 지역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계에서 합의하고 있는 지역학(Area Studies)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문맥상 지역연구라는 개념이 필요할 때는 이를 병용한다.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의 모색 1」, 『지중해 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7, P.255 참조

부설연구원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¹⁹⁾. 그러나 이런 연구원들은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시안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형식적인 지역자체는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역 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자체가 개설한 연구원들의 명칭도 초기에는 개발원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오직 경제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자체에 대한 역사, 문화, 사회 등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지역학으로서의 연구는 지역학 연구소가 생겨나고, 지역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난 이후에야 가능했다.

국내 지역학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도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지는데, 학문영역으로 보아서 지역사, 지역문학, 지역언어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지역연구가 이루어졌다²⁰⁾. 역사에서는 미시사를 통해 지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문학에서는 지역정체성을 반영하는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문학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언어 영역에서는 방언인 사투리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지역성 규명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는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이런 지역에 대한 영역별 연구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성의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의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등 지역의 삶의 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경험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라면, 지역성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²¹⁾. 이런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은 많은 지역에서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선으로 나아갔다. 1993년 서울시립대학에 서울학 연구소²²⁾가 공식적으로 개소하고 난 뒤에 제주학, 강원학, 충북학, 부산학, 인천학, 영남학, 호남학 등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학연구소가 개소되기 시작했고, 원주학 같은 소도시 단위의 지역학도 출현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배경에는 국내의 지자체의 시행이란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세계화라는 국외적인 흐름도 크게 작용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화가 초래한 탈 국가적 흐름은 삶의 실제적 단위체로서의 지역 혹은 지자체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독자적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그 노력을 지원하여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학문적 지원이 바로 지역학의 재조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²³⁾.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연구소들이 앞선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 연구원들이 정립하지 못한 지역성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을 열고, 연구결과들을 드러내기는 했

19)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전후로 지방 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지역에서 지자체 산하의 연구원을 개원하였다. 강원도(1994년 강원개발연구원으로 개원, 2001년 강원발전 연구원으로 개명), 경기도(1995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개원), 경남발전연구원(1992년 개원, 2000년에 경남발전연구원으로 개명), 광주발전 연구원(2007년 전남광주발전연구원 분리설립), 대구경북연구원(1991년 개원), 대전발전연구원(2000년 개원), 부산발전연구원(19992년 동남개발연구원으로 설립, 19994년 개명), 서울연구원(1992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설립, 2012년 서울 연구원으로 개명), 울산발전연구원(2001년 개원), 인천발전 연구원(1995년 개원), 전남발전 연구원(1991년 개원), 전북발전연구원(2002년 전북여성발전 연구원으로 설립, 2005년 전북발전 연구원으로 통합), 제주발전 연구원(1997년 개원), 충남발전연구원(1995년 개원), 충북발전연구원(1990년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 1994년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칭, 2011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개명)

20) 김동철외, 「한국학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과 과제」, 『동북아문화연구』20, 2009, P.228

21) 위의 논문, P.243

22) 서울학 연구소의 개소 목적은 1)서울 시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개성을 발굴 전파하는 것, 2)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3)세계 속의 한국을 상징하는 서울의 이미지 자체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우용, 「서울학 연구소의 성과와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학술토론회』발제지, 2002 p.22,

23) 김영일,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27, 2012, p.196

지만, 지역학이 지닌 학제적 연구의 특성상 아직까지 완벽한 지역학의 전형을 내보이고 있는 지역학은 없으며, 현재진행형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역연구가 지역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지역문화론의 논의 결과는 범박하게 말하면, 각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역 정체성의 확인이 그 지역의 문화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은 형성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지역정체성의 확인은 지역문화 분권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원천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의 지역정체성 확인은 결국 각 지역의 다양한 정체성으로 나타남으로써 각 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분권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각 지역마다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은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부산지역문화의 분권은 단순히 정치적 지방자치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지역분권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분권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멀어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제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지역문화 진흥 시대의 현안이다. 그러므로 이 현안을 주체적으로 안고 고민해야 할 과제 역시 부산문화재단이 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산은 16개 구군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부산지역 안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동해 나가야 한다.

3. 남는 말

문화 현상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는 생명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주어진 환경이 급변할 때, 문화 역시 변화를 위한 몸짓을 시작한다. 지역 문화진흥 시대라는 변화와 과제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추동해 나가야 할 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어떤 방향을 모색하든지, 그 판단은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마련된 부산문화 재단의 비전 2030이 실천과정에서 부산시 문화 비전 2030과 함께 잘 융합된 지점을 찾아 나아감으로써 부산지역문화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토론 1

지역문화재단 20년, 부산문화재단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이승욱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1.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계획을 선도하는 부산문화재단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세종과 울산까지, 현재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기초지자체에도 전국에 걸쳐 70여 곳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중앙정부에서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구조가 만들어졌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광역, 기초 지역문화재단으로 이어지는 문화행정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광역과 기초,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역할과 형식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문화재단은 기초예술진흥과 시민 문화향유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이나 대표적인 축제행사 등을 직접 운영, 실행하고 있다. 2009년 출범한 부산문화재단은 예산과 조직 모두 설립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감만문화창의촌을 비롯하여 9곳의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영역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넘어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내는 부산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고 나아가 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한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 장기 비전이 단지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단의 사업영역에서 그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과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발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입안 과정에서 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새롭게 출범한 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문화예술 관련 연구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부산 문화행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문화예술 실천을 위한 전략과 계획

2000년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과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기존 창작 지원 중심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예술 향유와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접근

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맞춰 부산문화재단도 기존의 문예진흥실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예술진흥본부와 생활문화본부로 개편하고 사업 영역과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러한 재편은 새로운 흐름에 조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획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생활문화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혼란, 예술가들의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활동 사이의 단절과 괴리라는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래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종사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들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단순 기능 전수나 향유 체험의 제공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에 관심과 문제의식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접점을 만들려는 공공예술이나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문화적 도시재생’의 영역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문화실천은 기존 활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화이트큐브나 블랙박스 같은 중성적인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지역의 전통과 연계된 장소성에 대한 고민, 창작과 향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탈피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전시와 공연 같은 일회적인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천과 교류, 다양한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연구조사와 아카이빙, 교육과 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 사이의 융합과 협업 등. 전통적인 예술활동과 생활문화의 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반 문화실천에 대응하는 부산문화재단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계획이 필요하다.

3. 부산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의 실제 운영에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의 확보와 자율적인 예산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인사의 독립성

문화부의 산하 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2005년 민간 자율(의사결정)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원 임명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위원들의 공모, 호선에 의한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출자 기관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하지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문체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공모-인사위원회 복수의 후보 추천-기관장의 임명 방식은 과거 일방적인 낙점방식에 비해 최소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기에는 미흡하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지자체장이 맡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법적 대표성을 민간으로 전

화하는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사회와 실질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예산의 자율성

재정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던 블랙리스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독립된 회계로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했지만 2003년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입장료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어 독립 회계의 토대를 상실했다.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은 단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예진흥기금 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국비 지원으로 대체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 지원금이 단순 위탁방식에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서 지역문화재단의 권한을 높이는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예산을 통한 지방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반복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자체의 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적립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이자수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미국과 달리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럽식 환경과 유사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나 민간의 후원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다른 문화재단의 공동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 2

부산문화재단 10주년 열린 포럼 토론문

양성수(사상구 생활문화연합회 운영위원장)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만, 그 조금의 기회 속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중요하다.

나는 20년 전 아픔의 충격으로 음악의 자유를 잃었다.

나에겐 음악이 사치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일만하다보니 내 속의 열정을 발산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엔 보이지 않은 우울함과 허무함 등이 뭉실뭉실 피어나오려는 찰나 난타와 드럼을 배우게 되었다.

장애인친구들과 난타를 두드리고, 드럼을 치는 밴드공연을 통해 잘하든 못하든 악기를 다루는 시간만큼은 내안에 있는 우울함과 허무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부산문화재단에서 각 구별로 동아리들을 발굴하며 연합회를 만드는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설명회에 빠져들었으며, 그 후 솔선수범하여 연합회를 동아리대표들과 문화재단 담당자들과 함께 창립하였고, 공연을 준비하여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펼칠 때마다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 60-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화려한 부채춤과 국악을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으로 행복했다. 단 10분의 공연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비녀를 꽂고 화장을 하시고 아주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힘들수록 문화는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있을수록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대중에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등재 된 가수와 같은 음악가들이 하는 예술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노래와 무용을 하는 사람 중에 전문 예술인이 아니라도 취미로 배우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음악 또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발굴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나 또한 장애인들의 재능을 발견해 음악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습을 하고,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에 막막했다.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참여하게 되고, 장애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자 자존감이 향상되어, 더욱 더 연습에 열중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음악은 마을을 살리는 활력소이다.

생활문화연합회의 동아리 회원들은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다.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쳐 마음으로 고민하고 문화센터에 기웃거리고, 음악소리가 들리면 멈춰서 귀 기울이고 있다가 수줍은 마음으로 배움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베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모아 생활문화연합회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어떤 공연을 선보일까 논의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도 문화예술인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생활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더 많은 음악들과 생활문화동아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들은 단순히 음악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에게 관내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타지역에서 생활문화연합회 공연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온 관객도 있으며, 공연을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여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배움을 통해 다른 문화활동을 접하고, 다른 수혜자들에게 봉사로 베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문화생활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문화 활동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다. 연습공간조차 확보가 어려워 동아리회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연습실을 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연장소 확보도 어려워 관내에서 대여가 가능한 실내무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내무대 특성상 홍보 없이는 외부인들이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객들이 없는 동아리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관객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보다 야외무대를 선호한다. 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펼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확산되려면,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마을 곳곳의 공원이나 마을쉼터 등 작은 무대라도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은 나 자신을 힐링하는 것에 멈추지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함께『같이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내가 악기를 하나정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악기와 음악을 통해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치유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힘들어 조금은 위로가 되어 삶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힐링의 장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무대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

토론 3

부산문화재단 10주년 열린 포럼 토론문

김수현(무용가, 판댄스 씨어터 대표)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춤을 배워서 부산에서 지금껏 춤추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2017년에 청년연출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청년 예술인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연출가의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청년연출가의 기준 나이를 만 40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부산문화재단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 지원은 2008년 저의 첫 개인전이었고, 마지막은 2017년 청년연출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10년간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재단의 정책 변화를 겪어오면서 느낀 점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무용가로서의 관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젊은 작가들이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청년연출가 사업은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타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관심있어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진(조명,무대미술,무대감독,의상 등)과 실연진(연출가,안무가,무용수 등), 스태프(기획,홍보,기술스텝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영역이 그 규모가 다를 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극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의 극장무대로는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예술회관, 민주공원, 신극장 등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선호하는 무대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 민주공원, 신극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대가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해운대문화회관 대극장은 무대 규모가 적당히 크면서 시스템적으로 조건(조명기,무대장치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관객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서 실연자의 호흡을 강도 있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서 조명과 무대장치들로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공원과 신극장은 소극장으로써 좁은 공간에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에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무대는 작가들에게 배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올리려고 하면 극장을 렌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미 렌트가 짝 찼거나,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사정으로는 재단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단이 최종지원해주는 금액으로 극장을 대여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극장 리모델링 후 렌트 금액이 더 올라서 공연 당일만 렌트하는 단체도 보았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이 슬플 뿐입니다. 젊은 작가들은 연륜이나 단체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담 기획이 없는 것이 실상이어서, 연출가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무대 렌트 부분부터 막히면 사실상 작품의 연출, 안무, 연습

에 집중해야하는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재단에서 이 부분에 도움을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지원사업에 한해서 극장 렌트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이 극장측과 협의
2. 재단에서 꽤 쓸모있는 극장을 소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
3. 최종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금액에 맞게 극장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도입
4. 최종지원금을 결정하실 때 극장 대여료를 고려하기(1회 공연 기준, 극장을 3일 렌트할 수 있는 비용 책정)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작가들은 언젠가는 중년 작가들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은 나름대로 부지런히 이런 저런 기회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지원을 받아서 겨우 한 작품 올려내는 것으로 그 힘을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작의 과정에서 오는 금전적인 문제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활비도 겨우 벌고 있는 것이 현실일 터인데,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금전적 부담(현재 조명, 무대미술 쪽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은 작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한해씩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1년초에 무용,미술,음악 교류사업으로 프랑스를 갔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예술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정된 예술가는 작업공간, 예술활동비, 생활비를 지원 받고, 안정된 상황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심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무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가를 전방위로 지원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예술가를 걸죽하게 길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그 파급효과와 집중도, 활성화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무대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재단이 상당부분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작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무대마다 가지는 특징을 살리는 작품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실제 사용될 무대 장치를 이용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부족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4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과 부산시민문화헌장

김배경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장)

1.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이란?

기존 문화정책과 현 시정에 국한되지 않은 중장기적 비전(2030년)을 담은 문화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7년 문화비전 아젠다 발걸을 시작으로 총 40여 차례 일반시민과 현장 전문가 3천 3백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이번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은 민간이 주도하여 내용을 채우고, 부산시가 실행 여부를 검토해 완성한 부산시 최초의 상향식 문화정책 비전으로 시민과 시정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된 2030비전은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를 향후 10년간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부산문화가 지향해야 할 4대 가치로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달성해야 할 4대 도시 목표로 ▲지역과 세계가 문화로 소통하는 해양문화도시 ▲경계를 넘어 다양성이 넘쳐나는 포용문화도시 ▲창의력으로 미래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융합창조도시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협치도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전략, 27개 과제, 8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10대전략 소개

토론자는 이번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해양도시 부산을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항일대 ‘문화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세계유산도시 부산 조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해양문화 도시브랜드 구축’한다. 또한, 남북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부산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을 본격화하고 전통성 강화를 위한 문화자산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③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조성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해 청년문화 등 경계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시민 문화권리보장을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문화기회를 확대한다.

④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

관계성 회복을 위한 '정담정 공간 조성 등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재생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문화 환경을 개선한다.

⑤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조성

문화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문화센터 인프라를 만든다. 아울러 문화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형 '문화포털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⑥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문화 플랫폼 도시 조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융합형 예술시장을 창출하고, 기술기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문화공간을 확충한다.

⑦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

문화예술인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지원 사업 확대, 자율형 공모 지원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문화인력 1,000여 명을 육성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부산예술인 복지 2030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생활안정화 사업을 확대한다.

⑧ 시민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강화

시민 문화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서 문화예술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

⑨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혁신도시 조성

시민문화권리보장, 행정의 과도한 문화예술 정책 개입 금지, 문화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로 문화 예산을 확대하여 2022년까지 2%선, 2030년까지 3%선 달성토록 할 예정이다.

⑩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문화분권 추진

부산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문화분권 실현 및 자치구 문화약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비전 실행을 관리 감독을 부산시 시민문화위원회 설치 등 부산형 문화협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조성을 완료한다.

3. 2030 달라지는 시민 문화생활 소개

앞으로 10년 뒤 시민들은 생활문화인프라 확대를 통해 집 앞 문화공간에서 일상이 문화가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또한, 정담정 공간, 마을문화사랑방 등을 통해 문문화소외계층이 없이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문화서비스를 강화해 유

아청소년은 유아예술놀이터 등을 통해 창의력 강화 및 자연스럽게 문화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청년은 문화관련 일자리 창출 및 청년 문화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이 부산에 정착하게 된다. 중장년은 동네 노인정 문화공간화, 퇴근 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시 전체가 부산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문화창업 지원, 창의적 문화공간 확대, 예술인 연습공간 확충, 예술인 복지 확충 및 예술인 고충을 실시간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4. 부산시민문화헌장 제정

부산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도 이런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장기과제다. 이에 우리시는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담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과 실천을 위한 규범인 ‘부산시민문화헌장’을 제정해 앞으로 부산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시민헌장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권, 문화예술 독립성 등 분야별로 선언적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문화예술인 및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정·공포할 계획이다.